

경매신청취하서

사 건 20○○타경○○○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○○○ 채 무 자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.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| 제출법원 |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93조, 함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|
| 제출부수 | 취하서 2통(1통은 기록에 가철, 1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 |
| | 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) |
| 기 타 | ·부동산경매신청의 취하 :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됨. |
| |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|
| |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|
| | 야 그 효력이 생김. ③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(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|
| |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) 또는 제6호(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 |
| | 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(和解調書) |
| | 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(公正證書)의 정본)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|
| |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, 제49조 제4호(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 |
| | 자가 변제를 받았거나,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) |
| | 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(민사집행법 제 |
| | 93조).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